

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4.

발 의 자 : 이용우 · 민병덕 · 김 윤
이주희 · 박지혜 · 박정현
임미애 · 백승아 · 박민규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국가에 대하여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,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,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질병관리청도 「검역법」에 따라 ‘해외감염병신고센터’를 운영하며 공항, 항만 등 입·출국장에 설치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신고에 의해선 코로나-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, 국제기구와의 교류, 감염병 발생 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할 별도의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·분석·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감염병감시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(안 제5조).

1.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·분석
2.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
3.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
4.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
5.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
6.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
7.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
8.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
9. 검사 분석 교육 및 지원
10. 그 밖에 국외감염병 관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업무
11.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13.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나. 감염병감시정보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

사와 감사 1명을 두기로 함(안 제6조).

다. 국가는 인건비, 사업비, 시설비 등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안 제16조).

라.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27조).

마.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설립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(안 부칙 제2조).

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·분석·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) 감염병감시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설립등기)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5. 공고의 방법

제4조(정관)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

4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7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9. 해산에 관한 사항
 10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 11.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
 12.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
 13.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사업)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·분석
2.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
3.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
4.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
5.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
6.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
7.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

8.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
 9. 검사·분석 교육 및 지원
 10. 그 밖에 국외감염병 관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업무
 11.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
 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 13.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- ② 감염병감시정보원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임원)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원장과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하고,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
③ 원장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임원추천위원회”라 한다)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, 비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.

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.

제7조(임원의 직무) ① 원장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을 대표하고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업무를 분장하며,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.

④ 감사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임원의 임기)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.

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2.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,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는 제외한다)에는 원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
2.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3.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4.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

제10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상임임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제11조(이사회)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·폐지에 관한 사항
4. 감염병감시정보원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5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6.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7.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
8.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
9. 그 밖에 원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2조(부속기관의 설치) 감염병감시정보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13조(직원의 임면 등)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.

② 직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

하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4조(대리인의 선임)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 재원)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,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, 제18조에 따른 차입금, 제19조에 따른 수익금,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.

제16조(출연 또는 보조) 국가는 인건비, 사업비, 시설비 등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17조(기부금품의 접수)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은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.

②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(차입금)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
제19조(수익사업 등)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운영 재

원에 충당하여야 한다.

제20조(사업연도)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·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22조(결산서의 제출)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)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친 수입·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(잉여금의 처리) 감염병감시정보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24조(운영평가 및 지도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의 경영상태, 감염병 감시 사업의 성과 및 대국민서비스 등을 포함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
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(출입·검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감염병 감시정보원에 출입하여 그 업무·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염병감시정보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염병감시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6조(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) ① 감염병감시정보원은 연구·전시·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·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·전시·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27조(공무원 등의 파견)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(이하 “공공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·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28조(비밀엄수의무)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임직원, 제27조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9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아닌 자는 감염병감시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30조(「민법」의 준용) 감염병감시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1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임직원(제27조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)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32조(벌칙)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3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2. 제29조를 위반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준비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.

③ 설립위원회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위원의 연명(連名)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.

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 비용) 국가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.

제4조(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임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

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
제5조(예산 편성에 관한 특례)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.